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명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8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8.

발 의 자:서명옥·김미애·박덕흠

박준태 • 최보윤 • 김상훈

박정하 • 진종오 • 서지영

정점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해 다양한 노출경로를 종합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.

현행 법률에 위해성평가의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인 인체적용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, 위해평가에 있어 위해요소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의 섭취나 사용으로 인한 요인 외에도 다 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외부 요인 등의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.

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위해성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협의하고,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계획수립·공동수행 등 협업체계를 운영하고자 함. 이를 위하여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신설하여 관계부 처 간 사전 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8조).

법률 제 호

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815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"위원회 및"을 "위원회, 실무협의회 및"으로 한다.

⑥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하려는 안건 상정 및 제10조제 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평가 수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 의가 필요한 사항을 합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19815호 인체적용제품의	법률 제19815호 인체적용제품의		
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	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		
법률	법률		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⑤	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⑤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⑥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		
	심의하려는 안건 상정 및 제10조		
	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평가		
	수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		
	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합의		
	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		
	<u>수 있다.</u>		
<u>⑥</u> (생 략)	<u>⑦</u> (현행 제6항과 같음)		
<u>⑦</u> 그 밖에 <u>위원회 및</u> 전문위원	⑧ 위원회, 실무협의회		
회의 구성・운영 등에 관하여	및		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			
한다.			